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8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서미화・문진석・윤건영

강준현 • 권향엽 • 김남근

소병훈 · 권칠승 · 박희승

전현희 • 백혜련 • 유종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·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 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 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함)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하고 있음.

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률이 없음. 이에 현행법에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강제징수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임(안 제206조, 제211조및 제237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8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6조제1항제2호마목 중 "제30조"를 "제30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3조의2"로 한다.

제208조제1항제6호 중 "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"를 "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3조의2에 따른 강제징수"로 한다.

제211조제1항 중 "세금"을 "세금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"으로 한다.

제212조제3항 중 "지방세"를 "지방세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"으로 한다.

제237조제1항제5호 중 "제30조"를 "제30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3조의2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06조(유치 및 예치) ① 세관장	제206조(유치 및 예치) ①		
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			
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	
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			
있다.	.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유치사유: 다음 각 목의 어	2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	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		
마. 「국세징수법」 <u>제30조</u>	마 <u>제30조,</u>		
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3		
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	조의2		
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			
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			
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	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
제208조(매각대상 및 매각절차)	제208조(매각대상 및 매각절차)		
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	①		
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			
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			
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. 다	,,		
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
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			

- 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.
- 1. ~ 5. (생략)
- 6.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, 「국세징수법」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(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)
- ② ~ ⑧ (생 략)
- 제211조(잔금처리)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, 관세, 각종 <u>세금</u>의 순으로 충당하고,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 다.
 - ② ~ ⑥ (생 략)
- 제212조(국고귀속) ①·② (생략)
 -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 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제30조에 따른
<u>강제징수, 「국민건강보험</u>
법」 제83조의2에 따른 강제
징수
<u></u>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11조(잔금처리) ①
세금,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7조에
따른 부당이득 징수금
·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12조(국고귀속) ①·② (현행
과 같음)
, – , .
③

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(관세・국세・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.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한다.

④ (생략)

- 제237조(통관의 보류) ① 세관장 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.
 - 1. ~ 4의2. (생 략)
 - 5. 「국세징수법」 <u>제30</u>조 및
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의2
 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
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
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
 - 6. (생략)
 - ② ~ ④ (생 략)

<u>지방세 및 「국민건강보</u>
헌법」 제57조에 따른 부당이
득 징수금

· ④ (현행과 같음)
제237조(통관의 보류) ①
,
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5 <u>제30조, 「국</u>
민건강보험법」 제83조의2
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